

【 달라지는 연말정산 항목들 】

올해 연말정산 때는 의료비 공제, 연금저축소득공제, 주택관련 소득공제, 신용카드 공제 등 근로자들의 공제항목들이 지난해보다 크게 달라진다. 이에 본지는 지난해와 달라지는 10가지 항목을 체크하여 게재 하니 관련서류를 미리 꼼꼼하게 챙겨 마감일 날 급히 서두르다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기 바란다.

1.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축소(조세특례제한법 126의2)

종 전	개 정
소득공제액 : 총 급여액의 15%를 초과하는 금액의 20%를 공제(한도:총급여액×20%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)	소득공제액 : 총 급여액의 15%를 초과하는 금액의 15%를 공제(한도:총급여액×20%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)

※ 2005. 12. 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

2. 연금저축소득공제 한도 인상(조세특례제한법 86의2)

종 전	개 정
연금저축불입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	연금저축불입액과 『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』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합계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

3.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범위축소(소득세법 52)

종 전	개 정
공제대상자 : 세대주인 근로자 - 국민주택 이하 주택 취득 * 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시 모기지론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 - 취득주택을 포함한 2주택 이상 소유자는 거주하는 주택에 한하여 공제 * 2이상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하나만 적용	공제대상자 : 세대주인 근로자 - 국민주택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취득 * 분양가격이 3억원 이하인 분양권 취득하고 완공시 모기지론으로 전환 -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소득공제 제외 * 2이상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공제 제외

※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전환당시 주택의 기준시가나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함.

※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함.

4. 국외근로 비과세 범위 축소(소득법시행령 16)

종 전	개 정
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국외 지역 근무자 : 월 150만원	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비과세 금액 축소 : 월 150만원 → 월 100만원 (외항원양어 선원은 현행 유지(월 150만원))

5.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신청시 주택 기준시가 확인서 제출(소득세법 시행규칙 58①4호)

종 전	개 정
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제출서류 -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- 주민등록등본 - 건물등기부등본	제출서류에 주택가액 확인서류 추가 -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- 주민등록등본 - 건물등기부등본 - 주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서류 ① 개별 주택가격확인서 ② 공동주택가격확인서 ③ 기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주택가액 및 분양 가격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6.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요건강화(소득세법 52)

종 전	개 정
과세기간 중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	과세기간 중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 로서 주택마련 저축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

7.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이중공제 배제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1의2)

종 전	개 정
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시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 가능	의료비공제액을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

- ※ 2006. 1. 1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
- ※ 신용카드 · 현금영수증소득공제의 이중공제 방지
- ※ 총 급여의 3%에 미달해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하였거나, 의료비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되는 총 급여의 3%이하 분은 신용카드공제 가능함

8.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(소득세법 52①)

종 전	개 정
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매년 1월 ~ 12월 지출분	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전년 12월 ~ 금년 11월 지출분

※ 2006년 연말정산에서는 2006. 1. 1 ~ 2006. 11. 30 까지의 지출 분을 공제함

9. 소득공제 증빙서류인 의료비영수증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의료비부담내역서 포함(소득세법시행규칙 58)

종 전	개 정
의료비 영수증 -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의한 의료비 영수증	의료비 영수증 -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의한 의료기 영수증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의료비부담내역서

10. 연말정산 간소화(소득세법시행령 113②, 소득세법시행령 216③, 소득세법시행규칙 285)

종 전	개 정
암호화코드, 복사방지마트 등 위변조 방지 장치를 갖춘 인터넷영수증도 소득공제증빙 영수증으로 인정 - 개인연금저축, 연금저축, 직업훈련비, 현금연수증, 의료비 일부(보험적용분)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출력	다음 소득공제에 대한 증빙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 출력하여 연말정산 가능 - 『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』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(퇴직연금소득공제) - 일반보장성보험료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(보험료공제) -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(의료비공제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의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과 보청기 구입비용은 제외) - 영유아보육법, 유아교육법, 초중등교육법,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(보육시설, 유치원, 학교)에 지출한 비용(교육비 공제) - 직업훈련비용(교육비 공제) - 개인연금저축불입액(개인연금저축공제) - 연금저축불입액(연금저축공제) -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 부담금(퇴직연금소득공제) -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(신용카드소득공제)